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검 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배재만 의원 외 6인

2. 제정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('22.1.13. 시행)으로 성주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성주군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, 성주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근무상황부 비치 및 근무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 (안 제3조, 제4조)
나. 공무원 휴가 및 출장 절차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, 제6조)
다. 근무상황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(안 제7조)
라. 업무의 인계 및 서류보관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8조, 제9조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,「공무원여비규정」, 「지방공무원 인사기록·통계 및 인사 사무처리 규칙」 등
○ 입법예고 : 의견없음(2021. 12. 17. ~ 12. 21.)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규칙안은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으로,

○ 성주군의회 공무원의 근무상황관리,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, 성주군의회 공무원의 효율적인 근무상황 관리를 위해 본 규칙을 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